



# 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<b>선 람</b>	기관장

제 80호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2015. 8. 18(화)

## 공 고

- 남원시공고 제2015-992호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…………… 1
- 남원시공고 제2015-993호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…………… 15

<b>회 람</b>										
--------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※ 발행 : 남원시 / 편집 : 홍보전산과 ☎(063)620-6032

남원시공고 제2015-992호

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18일

남 원 시 장

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1. 개정이유

-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에 따른 규제를 변경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·개축시 기부 채납에 대한 의무규정 완화(안 제10조)

- “사용검사와 동시에 남원시에 기부채납 하여야” 를 삭제  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 에 따라 정비

3. 참고사항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 : 우55738,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여성가족과
-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44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 문의는 남원시청 여성가족과(전화 063-620-62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남원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(안). 끝.

#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8.  
제 출 자 : 남 원 시 장  
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## 1. 개정이유

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검토결과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수탁자의 의무규정의 개선 권고된 건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 수련시설의 수탁자의 의무규정 중 시설에 대한 증·개축시 기부채납에 대한 의무규정 중 기부채납 규정 삭제하여 수탁자의 의무를 완화 (안 제10조)

나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## 3. 참고사항

가. 입법예고

- 기 간: 2015. 8.18. ~ 2015. 9. 7.(20일간)

- 결 과:

나.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수련시설(이하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 관하여”를 “수련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에”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명칭 및 위치)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(이하 “청소년수련시설”이라 한다)의 명칭은 남원청소년문화의 집이라 하며 남원시 관서당길 35에 둔다.

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정의는”을 “뜻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. “청소년”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.

제3조 제2호 중 “한다)이라 함은”을 “한다)이란”으로, “활동으로서”를 “활동을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“청소년문화의 집”이라 함은”을 ““청소년문화의 집”이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“단체”라 함은 20인이상이 동일”을 ““단체”란 20명 이상이 같은”으로 한다.

제4조 제6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남원시내”를 “남원시”로 한다.

제6조 제1항 중 “이용하고자 하는”을 “이용하려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의하여 사용토록”을 “따라 사용하도록

록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한다.

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다음”을 “시장은 다음”으로, “또는 일부에 대하여”를 “또는 일부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불가능할 때”를 “불가능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제1항에 따라”로, “사용할 때”를 “사용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인정하는 때”를 “인정하는 경우”로 한다.

제8조 중 “원래대로 조속히”를 “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”로 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동일한”을 “같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관리 하고자 ”를 “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시설을 위탁관리”로, “한계 및 기타”를 “한계, 그 밖에”로, “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”를 “등을 계약·체결하여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대하여 예산의 범위안”을 “예산의 범위”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”을 “및 운영재산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”를 “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”로, “때에는 이를”을 “때에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증·개축하고자 하는”을 “증축·개축하려는”으로, “얻어야 하고, 사용검사와 동시에 남원시에 기부채납 하여야”를 “받아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의하여”를 “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위반한 때”를 “위반한 경우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관단된 때”를 “관단된 경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, “인정할 때”를 “인정한 경우”로 한다.

제12조 중 “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공무원에게”로 한다.

제13조 중 “청소년수련시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”을 “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련활동"이라 한다)이라 함은  
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  
 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 시기  
 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  
 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  
 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  
 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  
 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.

3. "청소년문화의집"이라 함은  
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청소년  
 전용 활동공간과 문화, 예술,  
 정보, 취미활동, 동아리모임  
 등의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 
 말한다.

4. "단체"라 함은 20인이상이  
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  
 는 일행을 말한다.

제4조(사업) 청소년수련시설은 다  
 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- 1. ~ 5. (생략)
- 6.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 
 필요한 사업

제5조(시설의 이용) 남원시내에  
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  
 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.

제6조(이용협의) ① 단체 또는 개  
 인이 특정시설을 전속적으로 이

-----한다)이란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활동  
 을 -----  
 -----  
 -----.

3. "청소년문화의 집"이란 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  
 -----.

4. "단체"란 20명 이상이 같은  
 -----  
 -----.

제4조(사업) -----  
 -----.

- 1. ~ 5. (현행과 같음)
- 6. 그 밖에 -----  
 -----

제5조(시설의 이용) 남원시 ----  
 -----  
 -----.

제6조(이용협의) ① -----  
 -----

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 
남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  
다)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설이용 희망자가  
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  
선순위에 의하여 사용토록 한  
다.

- 1. · 2. (생략)
- 3. 기타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 
하는 문화예술, 체육행사

제7조(이용제한) 다음 각 호의 어  
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
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  
여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 
수 있다.

- 1.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  
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
- 2.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 
이용협의를 받은 자가 이용목  
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
- 3.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하  
다고 인정하는 때

제8조(변상책임) 시설의 이용자는  
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  
래대로 조속히 변상하여야 한  
다.

-이용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-----  
----- 경우에는 -----  
----- 따라 사용하도록 --  
-----.

- 1. · 2. (현행과 같음)
- 3. 그 밖에 -----  
-----

제7조(이용제한) 시장은 다음 ---  
-----  
----- 또는 일  
부 -----  
-----.

- 1. ----- 그 밖에 -----  
----- 불가능한 경우
- 2. 제6조제1항에 따라 -----  
----- 사용한 경우
- 3. -----  
--인정하는 경우

제8조(변상책임) -----  
-----  
----- 원상회복하거나 손해를 -----  
-----.



용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시설의 일부를 증·개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, 사용검사와 동시에 납원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장의 명령이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11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
2.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

-----  
-.

② -----  
-----관리할 때  
선량한 관리자 -----  
-----  
-----때에는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증축·개축하려는 -----  
-----  
-----받아야 -----  
-----  
-----.

④ -----  
-----따라 -----  
-----  
-----.

제11조(위탁의 취소) -----  
-----  
-----경우에는 -----  
-----.

1. -----위반한 경우
2. -----판단된 경우

3. 기타 시장이 위탁운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

제12조(감독)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3조(준용) 청소년수련시설의 재산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「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14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3. 그 밖에 -----  
-----인정한 경우

제12조(감독) -----  
-----공무원에게 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(준용)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4조(시행규칙) -----시행  
에 -----  
-----.

## 남원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 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  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 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 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남원시공고 제2015-993호

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5년 8월 18일

## 남 원 시 장

###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#### 1. 개정이유

「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」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가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 있어 다른 시설자의 명칭과 통일(안 제3조 및 안 제7조)

-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변경

나. 팀장, 팀원,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 「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」에 맞게 변경함(안 제8조)

- 팀장, 팀원 및 행정원의 정년 만 “58”세를 만 “60”세로 변경

다. 그 밖에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따라 정비

#### 3. 참고사항

가.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9월 7일까지 의견서를 남원시장(참조:여성가족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나. 의견제출 사항

-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의견 제출 : 우55738,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여성가족과
-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팩스(063-620-6744) 및 직접방문 등

4. 기타 문의는 남원시청 여성가족과(전화 063-620-6217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(안). 끝.

###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5. 8.  
 제출자 : 남 원 시 장  
 제안설명자 : 여성가족과장

#### 1. 개정이유

「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」의 종사자 채용의 지침 변경에 따른 관련 조례를 상위 운영 지침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의 명칭이 소장으로 되어있어 다른 시설의 장의 명칭과 통일(안 제3조 및 안 제7조)
  -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변경
- 나. 팀장, 팀원, 행정원의 정년을 관련법규 및 「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」에 맞게 변경함(안 제8조)
  - 팀장, 팀원 및 행정원 의 정년 만 “58”세를 만 “60”세로 변경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「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 - 1) 입법예고
    - 기 간: 2015. 8. 18. ~ 9. 7. (20일간)
    - 결 과:
  - 2) 비용추계서: 해당없음
  - 3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##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칭하며,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 내에”를 “하며, 남원시(이하 “시”라 한다)에”로 한다.

제3조 제1항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4조 중 “기준은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른”을 “기준은”으로 한다.

제7조 제1호 중 “복지센터소장”을 “복지센터장”으로 한다.

제8조 제1호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58세”를 “60세”로 한다.

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호의 1에 해당될 경우”를 “호에 해당될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해당할 때에는 당연퇴직 한다.”를 “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퇴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각각 당연퇴직 한다.”를 “당연퇴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.”를 “직권면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호 중 “때,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, “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.”를 “직권면직”으로 한다.

제11조 제1항 단서 중 “단,”를 “다만,”로, “때에는”을 “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

조 제2항 중 “수탁하고자 하는”을 “수탁하려는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운영하고자 하는”을 “운영하려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 제2항 중 “구성한다”를 “구성하되,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호선한다”를 “호선(互選)한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대표하고 직무”를 “대표하고 업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“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”를 “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13조 제1항 중 “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, 임시회의”를 “정기회는 반기별 1회, 임시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출석과”를 “출석으로 개의하고,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“위원에 대해”를 “위원은”으로, “실비”를 “여비”로 한다.

제14조 제1호 중 “제반”을 “모든”으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전반에 대하여”를 “전반을”로, “업무에 대하여”를 “업무를”로, “공무원으로 하여금”을 “공무원에게”로 한다.

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」 및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삭제

제17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2의 남원시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원 등의 선발 자격기준 구분 중 “소장”을 “센터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명칭과 위치) 명칭은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(이하 "복지센터"라 한다)라 <u>칭하며,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 내에 둔다.</u></p>	<p>제2조(명칭과 위치) ----- ----- -----<u>하며, 남원시(이하 "시"라 한다)에</u> ----- -----.</p>
<p>제3조(구성) ① 복지센터는 <u>소장과 상담지원, 통합지원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,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소장은 상근 또는 비상근 명예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3조(구성) ① -----<u>센터장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<u>센터장</u> ----- -----.</p>
<p>제4조(시설기준) 복지센터의 <u>시설 기준은 「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른 별표 1의 상담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시설기준) ----- <u>기준은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7조(자격과 임용) 제3조에 따른 복지센터 직원의 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<u>복지센터소장은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</u></p>	<p>제7조(자격과 임용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<u>복지센터장</u> ----- ----- -----</p>

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장이  
공개채용하며 임기는 2년으로  
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2.·3. (생략)

제8조(직원 등의 정년) 복지센터  
상근 직원 등의 정년은 다음 각  
호와 같다.

- 1. 소장 : 만 60세
- 2. 팀장, 팀원 및 행정원: 만 58세

제10조(직원의 면직) 복지센터 직  
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 
경우 당연 퇴직되거나 시장이  
직권면직 한다.

- 1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 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 
에는 당연퇴직 한다.
- 2. 제8조에 따라 직원이 정년에  
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  
에 있으면 6월 30일에, 7월부  
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  
1일에 각각 당연퇴직 한다.
- 3.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 
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,  
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 
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.
- 4.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

-----  
-----  
--.

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직원 등의 정년) -----  
-----  
-----.

- 1. 센터장 -----
- 2. -----60세

제10조(직원의 면직) -----  
-----호에 해당될 경  
우에는 -----  
-----.

- 1. -----  
-----해당될 경우에  
는 당연퇴직
- 2. -----  
-----  
-----당연퇴  
직
- 3. -----  
-----  
-----직권면직
- 4. -----

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,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직권면직 시킬 수 있다.

제11조(복지센터의 운영) ① 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이나 비영리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. 단,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위탁자의 결정은 상담의 전문성과 능력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와 복지센터 운영·시설관리 책임·위탁의 취소 등 위탁에 필요한 협약(별지 제2호서식)을 체결하여야 하고,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-----  
-----경  
우에는 -----  
직권면직

제11조(복지센터의 운영) ① 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다만, -----  
-----  
경우에는 -----  
-.

② -----수탁하  
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③ -----운영하  
려는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④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운영협의회 구성) ① (생략)

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청소년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(생략)

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. 다만,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제13조(협회의의 운영)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,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의 소집

제12조(운영협의회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구성  
하되, 어느 한쪽의 성별이 60퍼  
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 
한다.

③ -----  
-----  
-----호선(互選)한다.

④ -----대표하  
고 업무 -----  
-----  
-----.

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  
--두 번만 연임할 수 있다. 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3조(협회의의 운영) ① -----  
-----  
--정기회는 반기별 1회, 임시회  
-----  
-----

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.

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·④ (생략)

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제외한다.

제14조(협회의 기능) 협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지역 내 제반 청소년문제 관련 정보교환

2.·3. (생략)

제15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·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.

제16조(준용규정) ①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을 준용한다.

-----.

② -----  
출석으로 개의하고, -----  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위원은 -----  
-----  
-----여비 -----  
-----.

제14조(협회의 기능) -----  
-----.

1. -----모든 -----  
-----

2.·3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지도·감독) -----  
-----전반을 -----  
-----  
-----업무를 -----  
-----  
-----공무원에게 -----.

제16조(준용규정) 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「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」 및 「남원시 각종 위

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「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따른다.

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

② 삭 제

제17조(시행규칙) -----시행에 -----  
-----.

**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**

**비용추계서**

**◇ 비용추계 대상 여부**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 제1호에 따라 **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**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

-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-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과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- 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-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**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**
- 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- 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## 의견제출서

1. 의견제출 목록

2. 제출자

성명(명칭)

주 소

3. 의 견

4. 기 타

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(의견제출 및 처리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15년 월 일

의견서 제출인 주 소 :

성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전 화 :

남원시장 귀하

비 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